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제정,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시행령 제정 근거와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사전영향협의의 대상 및 절차,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4조)
- 다. 영향진단 대상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라. 영향진단 대상 사업 중 경미한 변경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영향진단 비용 지원 대상 건설공사를 규정함(안 제7조)
- 바. 진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사. 진단보고서 적정성 검토 의뢰 대상 기관 등을 규정함(안 제9조)
- 아. 진단보고서 보완 요청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 자. 진단보고서 검토결과 통보기간을 규정함(안 제11조)
- 차. 진단보고서 작성 시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상 및 지정 절차를 규정함(안 제13조)
- 타.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파.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안 제1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생 략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영향협의의 대상) 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에서 시행하는 개발계획으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개발계획으로서 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개발계획으로서 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개발계획이 시행될 경우 매장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상 개발계획의 사업범위가 감소되는 경우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대상 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전영향협의 절차)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영향협의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전영향협의 요청서 및 첨부서류가 제4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사전영향협의 검토를 위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한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획수립기관의 장이 서류를 보완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데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데 필요한 기간은 최장 30일로 한정한다.

제4조(사전영향협의 기준)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검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의 타당성 여부
3. 매장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이하 “역사문화환경등”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 및 보호방안 또는 보존조치의 타당성 여부

②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도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경우
2. 수계·수량 변경 또는 수질오염으로 역사문화환경등이 훼손될 우려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영향협의의 협의 절차, 검토 기준 및 재검토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영향진단의 대상 사업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결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1.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만 제곱미터 이

상인 경우

가. 매장유산 유존지역

나. 땅깍기나 땅파기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遺構)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

다.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浚渫),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

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3.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공사로 국가유산의 보호·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인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영향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1. 과거에 매장유산이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

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가. 역사서, 고증된 기록,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문
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나.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이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이 매장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지역. 이 경우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③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는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또는 조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
나 재직하였던 교원

3.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국립 박물관 또는 공립 박물관

나.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71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시·도문화유산위원회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2 또는 제41조의2
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 또는 시·도자연유산위원회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영향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해당 건설공사가 영향진단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
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으면 국가유산청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의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
한 결과를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건설공사의 경미한 계획 변경)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포함되
지 아니한 지역에서 건축물의 배치 계획, 용도, 높이 등의 변경을

말한다.

제7조(영향진단 비용의 지원)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7.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제8조(진단보고서 포함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역사문화환경 등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말한다.

제9조(진단보고서 검토 기관)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 국립해양유산연구소
3.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영향진단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법인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이에 드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진단보고서의 보완)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진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된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진단보고서 작성 내용·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3. 진단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해 역사문화환경등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경우
4. 그 밖에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방안 또는 매장유산 보존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진단보고서의 보완 결과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진단보고서 검토결과 통보)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다만 영향진단 관련 전문가
의 의견을 듣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날부터 7일을 말한다) 이
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및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진단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
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요구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보완서류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
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유산에 관한 교육과정
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국가유산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3. 국가유산 영향진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4. 그 밖에 국가유산 발굴, 수리, 복원, 건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교육 과정 및 내용의 체계성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3. 시설 및 장비 등의 교육 적합성
 4. 전문인력의 수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역적 분포
-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한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진단보고서 보완 요청 및 반려, 검토결과 통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이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허가·의제는 제외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3.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에 포함되는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이 4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점검
3. 영향진단 시행 및 결과에 관한 홍보
4. 영향진단에 관한 연구 성과물 출판
5. 영향진단과 관련된 전문인력 교육
6. 역사문화환경등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
7. 그 밖에 영향진단에 관한 업무에 관계되는 사항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영향협의 대상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은 이 영 시
행 후 수립하는 개발계획 또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향진단의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은 이 영 시행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영향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다목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매장유산의 지표조사 및 발굴에 드는 비용”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8호 중 “제6조”를 “제6조의2”로 한다.

제3조제2항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의2.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제47조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별표 3의3 제8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영향진단	제한 없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일 것
----------------------------	-------	--------------------------------

④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의2.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진단보고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협의 결과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결과(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대상사업으로 한정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사전영향협의 대상 계획의 구체적인 종류(제2조제3항 관련)

구분	대상 행정계획
가. 국토· 지역계획 및 도시 개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
	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정비계획
	4)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5)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6)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
	7)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도서개발사업계획
	8)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10)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
	11)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
	1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개발계획
	1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14)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1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1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광역시설계획
	1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1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2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
	3)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

	른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
	4)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 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1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1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된 협동화실천계획
	1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다. 교통시설 의 건설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에 따른 도로정비계획
	2)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3)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기본계획
라. 하천이용 및 개발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마. 산지 개발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시·도, 시·군·구 산촌진흥계획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도, 시·군·구 묘지 등의 수급계획
바.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2)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제12조 관련)

1. 다른 진단보고서의 복제 또는 표절의 금지
 - 가. 다른 진단보고서의 내용을 출처 없이 복제하거나 표절하지 아니할 것
 - 나. 가급적 최신의 자료를 활용할 것
2. 진단보고서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금지
 - 가. 현장 조사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 나. 영향진단의 방법을 충실하고 객관적으로 시행할 것
 - 다.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 존재 가능성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
 - 라. 관계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의 유형을 고려하여 자문할 것
 - 마. 주변 국가유산 현황을 통상적 주의로 확인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하지 아니할 것
3. 진단보고서 작성 재대행 금지
 - 가. 진단기관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게 작성하게 하지 아니할 것
 - 나. 진단기관 구성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금지사항의 위반 요구 금지
5. 진단보고서 작성 기초 자료를 제출할 것
 - 가. 법 제21조의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영향진단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후 5년간 보관할 것
 - 나.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한 경우 자문결과서를 진단보고서 제출 후 5년간 보관할 것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300만원
나. 법 제21조제2호를 위반하여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3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연 락 처	(042) 481 - 4994